

##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 
번호 159

제출년월일 : 1996년 월 일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제안이유

- 공중위생법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·미용사 면허 및 체육시설업 등 관련 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고
- 공연법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시·도지사로부터 시장·군수의 소관업무로 이관되어 시·군조례로 정하여야할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

### 주요골자

- 수수료 항목신설 : 11개항목
  - 이·미용사 면허증 교부 (신규 5,000원. 재교부 3,000원)
  - 체육시설업 관련항목 (최고 200,000원 ~ 최저 10,000원)
    - 골프장,스키장업,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사항
    - 체육시설업 신고사항 등
- 수수료 삭제항목 : 6개항목 (시·군조례로 규정)
  - 공연장 설치허가, 변경허가, 허가증재교부
  - 음반및비디오물 판매·대여업자 등록, 변경등록, 등록증재교부

개정조례(안)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: 별첨

##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조제2항 관련 별표2중 제2호 마목의 제명 “보건사회관계”를 “보건사회위생관계”로 하고, 동목(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동표 제2호 바목중 (3)내지 (5)와 (8)내지 (10)을 각각 삭제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단위 : 원)

구	분	기준	요	액
마. 보건사회위생관계				
	(3) 이·미용사 면허증 교부	1건	신 규	5,000
			재교부	3,000
사. 체육시설업 관계				
	(1) 골프장,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신청	”		200,000
	(2) 골프장,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	”		60,000
	(3) 골프장, 스키장업 등록신청	”		100,000
	(4) 골프장, 스키장업 변경등록신청	”		40,000
	(5)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	”		100,000
	(6)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	”		40,000
	(7)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신청	”		60,000
	(8)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	”		20,000
	(9)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	”		10,000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마목 (3)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